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16.11.28.)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17.9.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법안 주요내용 :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대하여 직무관련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이사장에게 해당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제출 서식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붙임 :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재정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정책관), 대전광역시(창조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공기업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재정점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공기업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정책과-264 (2017.08.25.) 접수 공기업담당관-10640 (2017.8.25.)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569 /전송 02-2100-3567 / songneg@moi.go.kr / 대시민공개